맞춤형농지지원(융자)

세부사업명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세=	7	Ę	융자금
내역사업명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예신 (백만			464,928
사업목적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사업 주요내용	농지의 매매, 임대, 교환분합 지원 * 기존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									
국고보조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법) 및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제34조(기금의용도)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지매입비축(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각시 상환) - 농지매매용 : 금리 1%, 11~30년간 분할상환 - 임차,임대용 :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동안 분할상환 - 교환분합 : 금리 1%, 10년 분할상환									
지원한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개인 10ha, 법인 20ha 등 *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 지원한도 상이 - 농지매매 : 35천원/3.3m²(생애첫농지취득자금지원 100ha, 45천원/3.3m²) - 장기임대차 : 관행 임대차료 수준 지원 - 교환분합 : 교환분합 농지 가격차액 지원									
재원구성 (%)	국고	- 7	기방비 - 융		융자	100%	자부담 -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17년) 2018년		1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맞춤형농지지원사업		299,371		334,300		448,300 (추경 60,000)		464,928	
	-농지매입비축		148,597		180,000		314,000 (추경 60,000)		361,200	
	-농지매매용		113,991		63,500		63,500		63,500	
	-임차임대용 -교환분합			36,391 392		0,000 800	70,000 800		40,000	
	<u> </u>					800 800 22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과			최수아 사무관 김순천 주무관		044-201-1732 044-201-173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관리시스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가의 성장단계별로 농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2030세대일반농업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I. 농지 수신(확보)

① 매매용 농지 매입

가. 매입 대상자

-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 전업·이농하려는 농업인,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 매수를 청구하는 자
- 나. 공사에 매도할 수 있는 농지
 -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또는 밭

다. 매입 제외농지

- ▶ 농지매매·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 1,983m³미만의 농지
-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라. 매도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

마. 매입 가격결정

▶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②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가. 매입 대상자

▶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농지 처 분명령을 받은 자

나.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과수원

다. 매입 제외농지

- ▶ 공부 지목과 실제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
- ▶ 1,983㎡미만의 농지
-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포함한 농지
-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 농지매매·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소유농지
- ▶ 소유권 행사 및 영농활동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이 있는 농지
- ▶ 연접된 제3자의 소유 토지와 합필 또는 혼합되어 필지의 형상이나 경계가 지적도와 대비하여 불분명한 농지
-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
- ▶ 군지역 35,000원/m², 시지역 50,000원/m² 초과 농지

라. 매도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

마. 매입 가격결정

▶ 일반농지 : 감정평가금액

▶ 처분명령농지 : 개별공시지가

③ 임대용 농지 임차

가. 임차 대상자

-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 전업, 은퇴하려는 농업인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 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자
 -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 단,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 1ha이하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

나. 임차 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실제 이용현황 기준)

다. 임차 제외농지

- ▶ 「농지매매용 농지매입」의 매입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 ▶ 「농지법」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 ▶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 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 ▶ 비농업법인의 농지
- ▶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 자 하는 농지

라. 임대 신청

- ▶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
- 마. 임차 기간 : 5~10년

바. 임차료 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관행 임차료 평균)을 초과할 수 없음

Ⅱ. 농지 여신(지원)

1 농지매매

⇒ 공사가 매입한 농지(매매용 농지 매입)를 지원대상자에게 매도

가.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공 고

▶ 공사가 확보한 농지정보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

□ 사업신청

▶ 농지매매를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공사 관할 지사 방문하여 사업신청

□ 지워대상자 선정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매도가격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 지원한도

▶ 논, 밭 모두 10,587.5원/m²이내(35,000원/3.3m²)→초과금은 자부담

라. 지원조건

- ▶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 ▶ 상환기간 : 연령에 따라 11~30년(연리 1%)

마. 지원농가 의무사항

▶ 최초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동안 벼 외 타작물 재배(위반시 지원금 회수),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은 이자 감면

2 생애첫농지취득지원

- ⇒ 공사가 매입한 농지(매매용 농지 매입)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 가.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지원대상자
 - ▶ 영농경력 2년 초과 및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만55세 이하의 자 (법인은 제외)
 - □ 공 고
 - ▶ 공사가 확보한 농지정보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전업 농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
 - □ 사업신청
 - ▶ 농지매매를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공사 관할 지사 방문하여 사업신청
 - □ 지원대상자 선정
 -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나. 매도가격 결정
 -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 다. 지원한도
 - ▶ 논, 밭 모두 13,612.4원/m²이내(45,000원/3.3m²)→초과금은 자부담
- 라. 지원조건
 - ▶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 ▶ 상환기간 : 연령에 따라 11~30년(연리 1%)

③ 임차농지 임대

- ⇒ 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 가.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공 고
 - ▶ 공사가 확보한 농지정보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전업 농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
 - □ 사업신청
 - ▶ 농지임차를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공사 관할 지사 방문하여 사업신청
 - □ 지원대상자 선정
 -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나. 임대 기간
 - ▶ 5~10년
- 다. 임대료
 - ▶ 공사와 농지 소유자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
- 라. 임대료 납부방법
 - ▶ 일시불 또는 원금 균등상환(무이자)

④ 비축농지 임대

⇒ 공사가 매입·소유한 농지를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가.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공 고
 - ▶ 공사가 확보한 농지정보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

□ 사업신청

▶ 농지를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공사 관할 지사 방문하여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임대 기간

- ▶ 5년(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10년간 임대 가능
 - 임대기간 연장 : 임대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임대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다.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 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

라. 농가 의무사항

- ▶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하여야 함
 - 임대료 : 80%, ~ 100% 감면

수 지원대상자별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1) 자격요건

대상자	자격 요건					
가. 청년창업형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 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나.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 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2030세대	■ 지원당시 연령이 만20세~만39세					
라. 귀농인	▶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의 만 55세 이하의 자▶ 거주지 지자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귀농인확인서를 공사에 제출					
마. 일반농업인	▪ 가호~라호 이외의 만64세 이하의 자					

2) 지원내용

	연령별·경영규모별·경력별 맞춤형 지원									
전업농육성 대상자	2-1 7 L		경영 규모	영농 경력	지원 내용					
पार्वित	성장 단계	연령			농지매매	생애첫동지 취득지원	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교환 분합	
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진입	만18세~ 만39세	-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2년 초과		1ha이내	이내			
나. 후계농업 경영인	진입	만18세~ 만49세	2ha 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성장		2ha 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4ha 이내	4ha 이내		
다. 2030세대	진입	만20세~ 만39세	2ha 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성장		2ha 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4ha 이내	4ha 이내		
라. 귀농인	진입	만20세~ 만55세	2ha 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성장		2ha 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4ha 이내	2ha 이내		
마. 일반 농업인	진입	만18세~ 만64세	2ha 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한도없이 지원	
	성장		2ha 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55세이하)	4ha 이내	nna 이내		